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715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6년 5월 26일
4. 회부일자 : 2026년 5월 27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가.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은 금융혁신을 선도하는 핀테크 분야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 및 보육하고, 여의도 서울핀테크랩과의 연계성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서울의 디지털금융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 나. 제2서울핀테크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사업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보육, 투자 연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 경험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실시한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18조
- 추진 필요성
 -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은 ‘핀테크’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현장 중심의 운영 역량이 요구되며, 변화가 빠른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민간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이 필요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입주기업 관리) 모집·선정 및 평가, 공간 관리, 사용료 징수 등
- (경영안정화 지원) 진단컨설팅, 기술·법률 등 멘토링, 교육 운영
- (시장 진출 지원) BM고도화, 마케팅 지원, 인재채용 등 기획·운영
- (규제 개선 지원) 혁신금융기술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개선 지원
- (블록체인 특화) 블록체인 기술 활용 관련 IY연계, 포럼 개최 등
- (투자유치 지원) IR Deck 제작, IR 밋업 및 데모데이 개최 등
- (성과조사) 입주 및 졸업기업 성과조사, 우수 사례 발굴 등
- (시설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의무이행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8·11층
- 시설규모 : 총 3,478㎡(전용면적 1,644㎡)
- 지원시설 : 기업 사무공간, 교육장, 공용라운지 등
- 위 치 도



마. 위탁기간 : 3년(' 27.1.~' 29.12.)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804,395천원(' 26년 기준)

○ 산출근거

- 인건비 362,100천원, 운영비 97,176천원, 사업비 316,122천원, 이윤 등
기타 28,997천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2.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나. 예산조치 : 2027년 민간위탁금 편성(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III.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제2서울핀테크랩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위탁 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2. 제2서울핀테크랩 조성 및 운영 현황

- 서울시는 핀테크산업의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과 핀테크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성장기 핀테크기업 지원 중심의 서울핀테크랩과 초기 창업 핀테크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제2서울핀테크랩을 운영 중에 있음.

< 서울핀테크랩 및 제2서울핀테크랩 기능 >

서울핀테크랩	제2서울핀테크랩
○ 개소 : 2018년 4월 ○ 소재 : 영등포구 여의도 ○ 기업지원 - 성장기 핀테크기업의 스케일업 - 유니콘 기업 배출 목표	○ 개소 : 2023년 1월 ○ 소재 : 마포구 ○ 기업지원 - 초기 창업 핀테크기업의 발굴 및 육성 - 성장지원

- 이 중 제2서울핀테크랩(이하 “제2핀테크랩”)은 핀테크 분야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보육하고 투자유치, 경영안정화, 규제개선, 블록체인 특화 지원 등을 통해 유망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 제2서울핀테크랩 현황 >

- 위치: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8·11층
- 규모: 총 2,014㎡(8층 1,007㎡, 11층 1,007㎡)
- 지원기업: 43개사(입주 30개사, 멤버십 13개사)(2026.2. 기준)
- 위탁기관: (주)씨엔티테크(2025.1.~2026.12.)
- 주요사무

▶ (입주기업 관리) 모집·선정 및 평가, 공간 관리, 사용료 징수 등
▶ (경영안정화 지원) 진단컨설팅, 기술·법률 등 멘토링, 교육 운영
▶ (시장 진출 지원) BM고도화, 마케팅 지원, 인재채용 등 기획·운영
▶ (규제 개선 지원) 혁신금융기술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개선 지원
▶ (블록체인 특화) 블록체인 기술 활용 관련 이연계, 포럼 개최 등
▶ (투자유치 지원) IR Deck 제작, IR 밋업 및 데모데이 개최 등
▶ (성과조사) 입주 및 졸업기업 성과조사, 우수 사례 발굴 등
▶ (시설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의무이행 등
○ 2026년도 예산: 2,027백만원(민간위탁금 804백만원, 사무관리비 1,221백만원 등)
○ 공간구성: 입주사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공용공간 등

- 제2핀테크랩은 2023년 1월에 개관하였으며 초기 5개월간(2022.11~2023.4)은 용역방식으로 시범운영 후 2023년 5월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2023.5.1)되었음.

< 제2서울핀테크랩 민간위탁 현황 >

계약기간	수탁기관	협약 방식
2022.11.~2023.04.	(주)오픈놀	용역
2023.05.~2024.12.	(주)씨엔티테크	민간위탁(신규위탁)
2025.01.~2026.12.	(주)씨엔티테크	민간위탁(재위탁)

- 한편 제2핀테크랩은 개관 이래 2025년까지 총 111개사의 입주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신규고용 344명, 매출 430억원, 투자유치 134억원,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211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 또한 CES 혁신상 수상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선정기업을 배출하는 등 초기 핀테크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성과가 확인되고 있음.

< 제2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실적 >

(단위: 명, 억원, 건)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신규고용인원	344	96	74	174
매출액	430	55	119	256
투자유치액	134	40	42	52
지재권출원·등록	211	64	53	94
수상실적	70	33	13	24
M O U 체 결	153	43	29	81

3. 민간위탁의 재위탁 타당성 검토

- 서울시는 제2핀테크랩의 입주기업 모집·선정 및 평가, 공간 관리, 경영 안정화 지원, 시장 진출 지원, 규제개선 지원, 블록체인 특화 지원, 투자 유치 지원, 입주 및 졸업기업 성과조사, 시설관리 등의 사무를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는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제2핀테크랩은 금융·핀테크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투자유치와 규제개선, 블록체인 특화 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설로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활용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함.
- 따라서 제2핀테크랩 운영은 법적 근거와 사무의 성격, 민간 전문성 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서도 ‘적정’으로 의결(2026.5.7.)되어 재위탁 추진을 위한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음.
- 다만 서울시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총점 87.96점으로 재계약이 가능한 수준임에도 동일 업체가 2회 연속 위탁운영한 점, 지도점검에서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한 점, 인건비 환수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을 추진한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하여 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에서는 인력 운영, 인건비 지급, 근태관리, 지출증빙, 계약관리 등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지도점검 주요 지적사항 >

시기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24.05.	참여인력 타사업 중복 참여(타사업과 중복 지급된 인건비 반납必), 근태관리 미흡 등	시정조치 완료
'24.12.	수의계약 분리발주, 예산 미편성 항목 지출, 기업 만족도 조사 미실시 등	시정조치 완료
'25.06.	참여인력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근태관리 미흡, 일부 지출증빙 누락 등	시정조치 완료
'25.12.	참여인력 수당 지급 관련 법정 기준 미준수, 계약기간내 용역 미완료, 전문가 활용시 일부 위원 반복 위촉 등	시정조치 완료

- 따라서 서울시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핀테크기업 지원 역량뿐만 아니라 회계·노무·계약관리 등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역량을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재위탁 이후 기존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반복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임.

입법조사관	연락처
신현두	2180-8055